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서울특별시장 제출 】

I. 총 관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9. 11. 1.
- 회 부 일 : 2019. 11. 5.
- 의안번호 : 1203

II. 예산안 개요

1. 세입

-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안은 2,995만원으로 2019년도 최종예산 2,809만원 대비 6.6% 증액된 규모임(표-1).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 289만원, 수수료 수입 850만원, 기타 사업 수입 1,856만원임.

<표-1> 2020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

구 분	2019년 최종 예산(B)	2020년 예산안(A)	증감	
			금액(B-A)	비율
계	28,090	29,954	1,864	6.6
재산임대수입	2,454	2,892	438	17.8
수수료 수입	6,400	8,500	2,100	32.8
기타사업 수입	16,903	18,562	1,659	9.8
과징금및과태료등	2,333	-	△2,333	△100

2. 세출

-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59억 8,300만원으로 2019년도 최종예산 276억 4,800만원 대비 6.0%가 감액된 규모임(표-2).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16억 300만원, 사업비는 243억 8,000만원임.

<표-2> 2020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최종 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감	
			금액(B-A)	비율
계	27,648	25,983	△1,665	△6.0
행정운영경비	1,459	1,603	144	9.8
사 업 비	26,189	24,380	△1,809	△6.9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세입 예산안 검토

-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은 2019년도 최종 예산대비 6.6% 증액된 2,995만원이 편성됐음(표-3).

<표-3> 2020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19년 최종 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감	
					금액(B-A)	비율
계			28,090	29,954	1,864	6.6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수입	현금인출기 청사 사용료	2,454	2,892	438	17.9
	수수료 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6,400	8,500	2,100	32.8
	기타 사업수입	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	16,903	18,562	1,659	9.8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및 과태료등	의원용 노트북 및 태블릿 PC 변상금	2,333	-	△2,333	△100

-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현금인출기 청사 사용료)은 공시지가 변동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43만원이 증액됐음.
- 수수료 수입(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재활용품 수거량 및 시세에 따른 판매 단가 상승 등을 감안해 전년대비 210만원이 증액됐음.

- 기타사업수입(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은 ‘20년 전망 물가상승률(2%)을 감안해 전년대비 165만원이 증액됐음.
- 한편,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의원용 노트북 및 태블릿 PC 변상금’은 제9대 의회 임기 종료 후 기 지급된 노트북과 태블릿PC를 분실했거나 미반환한 시의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0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전액 감액 편성했음.
- 그러나 ‘18회계연도 결산 당시 총 320만원(10건)이 미수납된 바, 향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한편, ‘20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의회사무처 공용 차량(카니발) 1대의 교체를 예정하고 있는 바, 기존 차량을 매각할 경우 불용품매각대금¹⁾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음.

1) 2018회계연도 결산 시 의회사무처 공용 차량 2대 교체 후 기존 차량을 매각함에 따라 928만원의 불용품매각대금(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한 바 있음.

2. 세출 예산안 검토

가. 총괄

-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59억 8,300만원으로 2019년도 최종예산 대비 16억 6,500만원(6%) 감액됐음(2쪽, 표-2).
 - 이 중 사업비는 243억 8,000만원으로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각종 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8억 900만원(6.9%)이 감액되었고,
 - 행정운영경비는 16억 300만원으로 의회사무처 조직 신설 및 정원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1억 4,400만원(9.8%)이 증액되어 총 16억 6,500만원이 감액된 것임.
- 한편, “20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이 서울시 일반회계(26조 9,020억 3,200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0%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보임(표-4).

<표-4>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일반회계) 중 의회사무처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시의회	25,184	27,006	27,648	25,983
서울시	22,528,929	25,211,115	26,858,339	26,902,032
비율	0.11	0.10	0.10	0.10

※ 2017년~2019년은 최종예산(일반회계)이며, 2020년은 제출된 예산(안)임.

- 특히 '19년부터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한 한도액 제한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세출예산안은 신규 사업이 전무하며,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의회사무처는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증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5).

- ‘의안의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4,772만원(312.1%)
- ‘의회안내 홍보책자 발행’에 4,740만원(237%)
- ‘의원수첩 등 제작’에 1,840만원(74.5%)
- ‘의회 청사 방호 및 청사 관리’에 7,187만원(25.5%)
-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 보수’에 7,963만원(10.2%)
- ‘의회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1,370만원(9.6%)
- ‘회의록 발간’에 390만원(8.7%)
- ‘해외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에 4,970만원(6.3%)
-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526만원(2.3%)
-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에 250만원(2.1%)
- ‘의정활동 수행비’에 5,381만원(0.6%)이 각각 증액됐음.

<표-5>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주요 증액사업 및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사 업 명	2019년 최종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 비율	주요 증액사유
의안의비용추계정보 시스템유지관리	15,291	63,016	47,725	312.1	▶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율 및 기간 증가 : 증10,543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DB 암호화 사용 S/W 도입 : 증37,182
의 회 안 내 홍 보 책 자 발 행	20,000	67,400	47,400	237.0	▶ '20년 원구성 변경에 따른 신규 제작비 반영 : 증47,400
의 원 수 첩 등 제 작	24,700	43,100	18,400	74.5	▶ 제10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원 수첩, 상임위 및 선거구별 현황표 제작 비용 반영 : 증18,400
의 회 청 사 방 호 및 리 청 사 관 리	281,994	353,865	71,871	25.5	▶ 촉탁계약직근로자 임금 상승분 및 퇴직금 반영 : 증71,871
의 정 정보 화 시 스템 유 지 보 수	777,786	857,416	79,630	10.2	▶ 무상하자보수 기간 만료 등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비 증가 : 증56,142 ▶ 주전산기, 통신장비 등 유지보수 대상 물량 증가 : 23,488
의 회 인 터 넷 영 홍 페 이 지 운 영	142,574	156,275	13,701	9.6	▶ 보안인증서(SSL) 사용료, 상용 S/W 라이선스 구매 등 운영비 증가분 반영 : 증13,701
회 의 록 발 간	44,730	48,630	3,900	8.7	▶ 임시속기사 속기수수료 증액 : 증3,900
해 외 자 매 도 시 교 류 및 국 제 회 의 참 석	794,176	843,876	49,700	6.3	▶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개최 증가 및 직원국외연수 전문가 간담회 신설 : 증5,200 ▶ 의원국외여비 증액 : 증22,000 ▶ 비교시찰 기념품 구매 : 증22,500
청 소 년 의 회 교 실 운 영	224,950	230,215	5,265	2.3	▶ 학생 명패 제작 단가 조정 및 우수 참여자 상품 구매 : 증5,625
유 공 시 민 상 표 창 및 시 상	121,250	123,750	2,500	2.1	▶ 의장표창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증가 : 증2,500
의 정 활 동 수 행 비	9,355,615	9,409,431	53,816	0.6	▶ 의장협의회 회장 사도 협의체 부담금 추가 편성 : 증44,406 ▶ 의원 역량개발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의회비 조정 : 증9,410

- 주요 감액사업 내역을 감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6).
 - ‘의회신문고 운영 및 민원현장보고서 발간’은 민원관리카드 전산화 개발 완료 등에 따라 1,700만원(49.5%)
 - ‘의회입법정책 연구용역’은 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연구용역비 감액 등에 따라 5억 975만원(46.7%)
 - ‘의정 정보화 지원’은 본회의장 전광판 교체 등 정보화 사업 완료 등에 따라 7억 5,740만원(40.6%)
 -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은 도서관리시스템 개발 사업 완료 등에 따라 9,029만원(33.3%)
 - ‘의회 노후집기 및 정수물품 구매’는 본관 및 의원회관 로비 집기 교체 완료 등에 따라 1억 4,262만원(31.7%)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등 개최’는 재정분권 토론회 미개최 등에 따라 1,550만원(28.8%)
 -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는 의정정책포럼 종료 등에 따라 5,150만원(19.3%)
 - ‘의회 홍보 촬영장비 관리’는 통합방송 스튜디오 구축사업 완료 등에 따라 3,040만원(16%)
 - ‘의회 청사 시설개선’은 의원회관 로비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 사업 완료에 따라 1억 4,370만원(10.3%)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는 상반기 총선일정을 고려한 방송·광고 비용 축소 및 유사사업 재조정 등에 따라 3억 2,240만원(7.9%)이 각각 감액됐음.

<표-6>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주요 감액사업 및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명	2019년 최종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 비율	주요 감액사유
의회신문고운영 및 민원현장보고서발간	34,360	17,360	△17,000	△49.5	▶ 민원관리카드 전산화 개발 완료 : △17,000
의회입법정책 연구용역	1,092,150	582,400	△509,750	△46.7	▶ 의원역량강화 TF 연구용역 완료 : △100,000 ▶ 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연구용역비 등 감액 : △409,750
의정정보화지원	1,867,329	1,109,928	△757,401	△40.6	▶ 입법조사회답시스템 구축, 전산실 가상화 시스템 구축, 본회의장 전광판 교체 등 5개 정보화 사업 완료 : △757,401
의회전문도서관운영	271,505	181,212	△90,293	△33.3	▶ 도서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 완료 : △85,000 ▶ 무상하자보수기간 내 유지보수비 감소 등 : △5,293
의회노후집기 및정수물품구매	450,310	307,690	△142,620	△31.7	▶ 본관 및 의원회관 로비 집기 교체 완료 : △82,000 ▶ 의원연구실, 의장단 집무실, 사무처, 공용회의실 등 집가가구 교체 물량 감소 : △60,620
시민과함께하는서울 살림토론회등개최	53,800	38,300	△15,500	△28.8	▶ 예산안 토론회 개최 규모 조정 : △3,500 ▶ 재정분권 토론회 미개최 : △12,000
시민의견청취를위한 공청회및토론회개최	267,500	216,000	△51,500	△19.3	▶ 제10대 의회 하반기 원구성 변경에 따라 공청회토론회 개최 감소 예상 : △31,500 ▶ 의정정책포럼 종료 : △20,000
의회홍보 영상비관리	190,145	159,745	△30,400	△16.0	▶ 통합방송 스튜디오 구축사업 완료 등 : △30,400
의회청사시설개선	1,393,700	1,250,000	△143,700	△10.3	▶ 의원회관 로비 리모델링, 의원연구실 외벽 단열 등 시설개선 사업 완료 : △143,700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4,093,162	3,770,754	△322,408	△7.9	▶ 상반기 총선일정을 고려한 방송광고 비용 축소 및 유사사업 재조정 등 : △322,408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계속사업

1) 의회비(205)

<사업별설명서 p.43, p.120, p.125, p.129>

- 의회비(205)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1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전년 최종예산 대비 6억 2,581만원(6.2%) 증액된 106억 6,741만원이 편성됐음 (표-7).

<표-7> 2020년도 의회비 관련 12가지 경비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최종 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감액 (B-A)	비고
계	10,041,603	10,667,419	625,816	
① 의정활동비	1,980,000	1,980,000	-	
② 월정수당	5,166,731	5,147,169	△19,562	'20년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사항 반영 (19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의 50%인 0.9%)
③ 의원국내여비	198,000	198,000	-	
④ 의원국외여비	487,988	509,988	22,000	<총액한도제> 총액한도제 적용 통계목간 조정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증액 반영
⑤ 의정운영공통경비	1,015,242	1,015,242	-	<총액한도제>
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96,120	415,200	19,080	<총액한도제> 의장협의체 회장 단체 한도 외 추가 편성
⑦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142,000	167,800	25,800	
⑧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88,000	66,000	△22,000	<총액한도제> 총액한도제 적용 통계목간 조정 일부감액
⑨ 의원정책개발비	-	550,000	550,000	※ 2020년 통계목 신설 (지방의원수 110명 x5,000천원)을 반영 하여 별도 한도 산정
⑩ 의장협의체부담금	200,203	244,609	44,406	의장협의체 회장 단체 특별 부담금 반영
⑪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88,116	178,982	△9,134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감소
⑫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79,203	194,429	15,226	보험요율 인상분 반영

- 이처럼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5억 5,000만원)를 신설하고, 의장협의회 회장 취임에 따른 특별 부담금(4,440만원)과 의회운영 업무추진비(1,908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 최근 3년간 지방의회의 의회비(205)와 관련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음.

〈표-8〉 최근 2년간 예산편성 기준 개정내역

구분	편성 기준			
	2016년	2017년 개정 ²⁾	2018년 개정 ³⁾	2019년 개정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원 1명당 6,100천원 (예결위원 1명당 2,000천원 별도)	총액한도 내 자율 편성 □ 한도액 -의정운영공통경비 (최근 3년평균×1.297)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최근 3년평균×1.176) *의장이 협의회 회장인 경우 30% 추가편성 가능 -의원국외여비 (최근 3년평균×1.05) *국제행사, 자매결연 등에 30% 범위 내 추가 편성 가능	총액한도 내 자율 편성 □ 한도액 -의정운영공통경비 (최근3년평균×1.297)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최근 3년평균×1.176) *의장이 협의회 회장인 경우 30% 추가편성 가능 -의원국외여비 (최근 3년평균×1.05) *국제행사, 자매결연 등에 30% 범위 내 추가 편성 가능 -의원역량개발비(민간 위탁) (최근 3년평균×1.05) * 단, '19년에 한해 의원 1인당 80만원 범위내 서 한도 조정 가능	좌동 * 단, 의원국외여비 위법 집행 시 제재수단 운영 가능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5,300천원/월 부의장 2,600천원/월 상임위원장 1,600천원/월			
의원 국외여비	의원 정수(106명)×2,000 천원 -25%범위내 조정 가능 -국제행사, 자매결연 등에 30% 범위 내 추가 편성 가능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	의원역량개발비 신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분리)		
의원역량 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		의원역량개발비를 '민간 위탁'과 '공공위탁·자체 교육' 2개로 분리	좌동
의원정책 개발비	-	-	-	신설 (1인당 500만원 범위내)
의장협의체 부담금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시·도의회의장협의체 부담금	좌동	좌동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 등	좌동	좌동	좌동

구 분	편성 기준			
	2016년	2017년 개정 ²⁾	2018년 개정 ³⁾	2019년 개정
월정수당	관계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편성	좌동	좌동	좌동
의원국내여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1·2·3> 참조

- ‘20년에는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인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해 1인당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의원 개인에게는 지원이 불가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 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토록 했음.
- 그동안 의회사무처는 의회비 항목을 3개 사업에 각각 분리해 편성해 왔으며, 금년에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의회입법정책 연구용역 사업에 신규 편성하는 등 4개의 세부사업에 걸쳐 분리·편성했음.

2) 2017년까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3개 통계목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준액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2018년부터는 이들 통계목의 기준경비에 대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합당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그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했음.

3) 2019년에는 의원역량개발비를 ‘민간교육기관 위탁경비’와 ‘공공기관 위탁교육비 및 자체교육비’ 2개로 분리 하되, 전자에 대해서는 총액한도제를 적용토록 했음.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민간교육기관 위탁 교육비를 편성할 수 있는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통계목을 신설함(‘18년 신설된 ‘의원역량개발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 외래강사료에만 편성하도록 설정). 다만, 과도한 역량개발비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를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관리토록 함.

<표-9> 의회비 항목별(12개) 사업예산 편성 내역

구 분	의회비 항목	비 고
의정활동수행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장협의체 부담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9개 항목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의원국외여비	1개 항목
국내 의정활동 교류	의원국내여비	1개 항목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의원정책개발비	1개 항목 (신설)

- 그러나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의회비 항목(205)을 별도로 규정해 의회사무처의 타 사업 예산과 구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통일성 제고 차원에서 1개의 세부사업 예산으로 통합·편성하는 등 예산의 재구조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사업별설명서 p.15>

-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의회 민주주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시의회 홍보와 민주시민의 소양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26만원(2%) 증액된 2억 3,021만원으로 편성됐음.

<표-10>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224,950	224,950	230,215	5,265	2

- 이는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사용하는 학생명패 단가 상승(8,000원→9,000원)을 반영해 그 제작 비용(1,092만원→1,228만원)을 증액하고 우수참여자 상품 구매 비용(390만원)을 신설했기 때문임.

- 최근 3년간 진행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의 세부 사업인 ① 청소년 의회교실, ② 본회의장 방청·참관 프로그램, ③ 청소년 민주시민아카데미의 추진 실적은 아래 표와 같음.

<표-11> 최근 3년간 청소년 의회교실 세부 사업 추진 실적

연 도	청소년 의회교실	본회의장 방청·참관 프로그램*	청소년 민주시민아카데미
2019년	11회/ 463개교/ 978명*	7,861명*	67회/ 2,020명
2018년	13회/ 457개교/ 1,143명	9,111명	28회/ 1,027명
2017년	14회/ 552개교/ 1,311명	14,633명	32회/ 1,067명

* 2019년 청소년 의회교실은 12월 중 2회 추가 예정, 본회의장 방청·참관 프로그램은 11월 15일 현재 수치

- 의회교실과 본회의장 방청·참관이 예년과 유사한 참가 실적을 거둔 데 반해 민주시민아카데미는 2017~18년 대비 대폭 증액된 예산으로 참여 대상을 초등생까지 확대하여 참가자 수가 크게 증가되었음.

<표-12> 최근 3년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추진 실적

연 도	추진 실적	사업비	운영기관
2019년	67회 2,020명 (초등 1,074명, 중등 564명, 고등 149명, 기타 233명)	78,000천원	(사)한국 청소년재단
2018년	27회 1,011명 (중학생 636명, 고등학생 375명)	37,620천원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2017년	32회 1,067명 (중학생 566명, 고등학생 501명)	37,829천원	(사)한국 청소년재단

- 이와 같이 민주시민아카데미는 참가횟수 및 참가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회교실이나 본회의장 방청·참관 사업과 달리 의회와 관련된 교육 과정이 부재한데, 이는 동 사업이 시의회의 재정 지원(위탁)을 통해 실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임.

<표-13> 2019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교육 과정

주 제	세부 내용
민주주의와 참여	무선전자투표 활용 선거 체험, 민주사회의 의사결정 나누기
상황극으로 만나는 민주시민	갈등상황 연출 및 해결 상황극, 평화와 갈등 이해
민주시민로드 체험하기	지역의 민주주의 현장 방문, 역사 속 민주주의 체험
민주시민 캠페인	지역공동체의 문제 해결 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활동

- 특히 2019년 기존 교육 과정 중 지역공동체 문제를 다루는 ‘민주시민 캠페인’의 경우 해당 지역 의원이 강사로 참여할 경우 그 교육이 좀 더 많은 실효성을 가지며 의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음.
 - 민주주의 현장을 방문하거나 체험하는 ‘민주시민로드 체험하기’ 또한 그 현장에 직접 참여했거나 관련 있는 시의회 의원이 가이드 역할을 담당했다면, 현장감 넘치는 교육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을 것임.
- 따라서 민주시민아카데미는 ‘의회 홍보와 민주시민 소양 증진’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그 교육 과정에 의회의 위상·역할·활동에 관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시의회 의원이 직접 교육에 참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의회운영 지원

<사업별설명서 p.20>

-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5,179만원(4%) 감액된 10억 7,216만원을 편성했음(표-14).

<표-14> 2020년 의회운영 지원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9최종예산	2020예산(안)	증감	산출 세부내역
의회운영 지원	1,123,952	1,072,160	△51,79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500만원×4회 = 2,000만 <이하 생략>

- 이처럼 감액된 이유는 인쇄비 등 일부 증액(7,516만원)에도 불구하고 의장기 촉구 및 족구대회 예산 등을 삭감(1억 2,696만원)했기 때문임.
- 산출 세부내역 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개최’ 예산이 연 4회를 기준으로 각 회당 500만원, 총 2,000만원이 편성됐음.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관 제13조 및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회의 장소는 시·도별 순서에 따라 운번제로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의 임기 중 1회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연간 2회로 조정하되 1회당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현실화하는 등 산정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동 사업 예산은 의장협의회 회의뿐만 아니라, 실무기구인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의 개최 시에도 동일수준의 예산 지원이 요구되는 바, 산출기준 세부 내역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로 변경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는 17개 광역의회 간 공동 현안문제 해결과 정보교류 등을 위한 협의체이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감안할 때, ‘의회운영 지원’ 보다는 ‘국내 의정활동 교류’ 사업으로 이관해 편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의정 정보화 지원

<사업별설명서 pp.66-72>

○ 의회 내 컴퓨터·노트북·프린터 등 다기능사무기기와 네트워크·인터넷 등을 관리하고,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ONE-STOP 네트워크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전자시스템을 구축·고도화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7억 5,740만원(40%) 감액된 11억 992만원을 편성했음.

<표-15> 의정 정보화 지원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867,329	1,867,329	1,109,928	△757,401	△40

- 이는 의원용 백신과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갱신에 5,588만원, 의원회관 랜실

노후 케이블 교체·정비에 196만원, 의원연구실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에 3,946만원, 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에 3,123만원,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증설에 6,948만원, 의안처리시스템 구축에 3억 6,650만원,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고도화에 8,774만원, 의정플러스시스템 이중화에 1억 5,447만원 등 총 8억 635만원이 증액됐고,

- 입법조사회답시스템 구축 완료로 2억 7,823만원,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용 인터넷 회선비 2,260만원, 본회의장 전광판 교체 완료로 9억 8,800만원,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장비 교체 완료로 1,998만원, 전산실 가상화 시스템 구축 완료로 1억 6,610만원, 의원용 노트북 임대 기간 만료(2020.8.)로 3,011만원, 전산실 노후 장비 교체 수요 감소로 5,872만원 등 총 15억 6,375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임.

<표-16> 2020년 의정정보화 지원 사업 증·감액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증액		감액	
의원용 백신·상용 S/W 구매·갱신	증55,880	(종료)입법조사회답시스템 구축 (ONE-STOP 네트워크 시스템 3단계)	△278,236
의원회관 랜실 노후 케이블 교체·정비	증1,968	(종료)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용 인터넷 회선(기존 인터넷망 사용)	△22,604
의원연구실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	증39,465	(종료)본회의장 전광판 교체	△988,000
(신규)전자회의시스템 고도화	증31,235	(종료)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장비 교체	△19,982
(신규)정보보호시스템 도입·증설	증69,481	(종료)전산실 가상화 시스템 구축	△166,100
(신규)의안처리시스템 구축 (ONE-STOP 네트워크 시스템 3단계)	증366,508	의원용 노트북 임대 만료(2020.8.)	△30,112
(신규)의정활동지원시스템 고도화 (ONE-STOP 네트워크 시스템 2단계)	증87,743	전산실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수요 감소	△58,724
(신규)의정플러스시스템 이중화 (ONE-STOP 네트워크 시스템 1단계)	증154,477		

- ONE-STOP 네트워크 시스템은 의원·시민·집행부 간 정보 공유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의원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정보 활용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6년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역량강화 TF 추진 과제로 결정된 이후 그 세부사업이 꾸준히 구축·시행되고 있음.

<표-17> ONE-STOP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상황(세부사업 최초 구축 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세부사업	의정플러스+ 시스템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입법조사회답시스템	의안처리시스템
시스템 구축 기간	2017.12.19.-2018.6.18. (오픈:2018.7.1.)	2018.6.-12. (오픈:2019.1.31.)	2019.6.10.-12.9. (오픈:2019.11.1.)	2020.6.-11. (관련 예산 편성)
소요예산	2억 3,000만원	10억 1,318만원	2억 2,407만원	3억 6,650만원 (편성)
주요내용	-의정활동지원서비스 -모바일 동시 지원 -시의회시스템 연계	-의원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요구자 료 전자시스템 구축	-입법조사회답 업무 온라인 서비스 구축	-의원서명, 의안접수 단계 전자화 -의안 처리 현황 및 통계관리 기능 포함

- 2019년 11월 기준 1단계(의정플러스+)·2단계(의정활동지원시스템) 사업과 3단계 사업 중 입법조사회답시스템이 구축 완료됐고, 2020년에는 그동안 대면 처리만 가능했던 의안 접수 단계를 전자화 하고 의안 발의 시 수기로만 가능했던 의원 서명을 전자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의안처리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임.
- ONE-STOP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의원요구자료·의사 일정·회의실 대관 현황과 같은 정보 공유부터 입법조사회답·비용추계·의원전자서명·의안접수 등 의원 입법 발의에 이르기까지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관리할 수 있는 바,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시스템 구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미 구축된 사업의 고도화와 이중화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됨으로써 시스템 이용 시 불편함이나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5)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사업별설명서 p.73>

- 시민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과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관리기반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약 1,370만원(9%)이 증액된 1억 5,627만원이 편성됐음.

<표-18>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42,574	142,574	156,275	13,701	9

- 이는 의회안내 키오스크 구입 완료와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완료에 따른 유지보수비와 문자전송이용료⁴⁾가 감액(3,367만원)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상용 SW 4종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구입과 보안인증서 비용 등이 증액(4,737만원)되었기 때문임.

4) 홈페이지 대시민 문자전송 서비스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지가 있어 '18.6.30.(제9대 의회 종료일)로 운영을 종료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제10대 의회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대상 의정활동 업무연락 용도로 활용토록 서비스를 제한하여 문자서비스 제공 중에 있음.

<표-19> '19년 문자서비스 집행내역

(단위 : 건, 원)

구 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월청구분까지)
사용건수	720	292	284	130	14
집행예산	29,040	9,580	13,730	4,390	1,340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는 신속 정확한 정보현행화 및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 제공을 통해 서울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대외적으로 서울시의회 홍보를 위한 주요 수단임.
- 이에 의회사무처는 '19년 청소년의회와 외국어 홈페이지(영문, 중문, 일문) 콘텐츠 및 디자인 전면 개편을 위해 1억 2,013만원을 집행했음.
 - 청소년·외국어 홈페이지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개편, 부서 의견조사를 통한 콘텐츠 보강 및 정보 현행화, 외국어 홈페이지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감수를 실시했음.
- 그러나 최근 외국어 홈페이지 경우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콘텐츠의 심각한 부족과 시기에 맞지 않는 사진 게재 등 적절한 정보제공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홈페이지 상에 제공된 정보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잘못된 사항이 있거나 현행화가 되지 않은 부분은 즉각 시정하는 등 홈페이지를 포함한 각종 정보제공 매체의 관리·운영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6)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사업별설명서 p.90>

-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를 발행해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0만원 감액된 9억 1,785만원이 편성됐다.

<표-20>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A)			
계	918,156	918,156	917,856	△300	0

-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편집시간 검토료(검토위원 6명→8명)가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시민기자 교육 및 행사가 축소(2회→1회)되었기 때문임.

- 의회사무처는 매 회기 종료 후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서울의회보’ 45,000부를 정기적으로 발행해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구독희망 시민 등에게 배부해 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발행 및 배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21> 최근 3년간 의회 소식지 발행 및 배부 현황

(단위 : 회, 부)

연 도 별	발행 횟수	발행부수	1회당 배부현황				비고
			계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구독희망시민	행정망 (의회, 시청 등)	
계	17	735,000	130,000	69,799	54,280	5,921	
2019년	5	225,000	45,000	26,906	15,414	2,680	
2018년	6	270,000	45,000	25,898	16,587	2,515	
2017년	6	270,000	45,000	19,986	22,727	2,287	

- 서울시의회 소식지 사업예산의 우편 발송료가 전체 사업 예산의 1/4(약 24.8%, 2억 2,8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웹진 활용, e-mail 전송 등 예산 운용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표-22).

<표-22> 의회 소식지 발행 예산 중 우편요금 편성안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우편요금 950원*40,000통*6회 = 228,000천원	○ 우편요금 950원*40,000통*6회 = 228,000천원

- 또한, 향후 배부처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거나 공공기관과 다중이용 시설 중 수령을 희망하는 곳을 다시 파악하는 수요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발행부수나 배부처의 조정, 배부방법 변경 등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업별설명서 p.110>

- 시의회에 대한 시민 인지도 및 호감도를 제고하고자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2,240만원 (7%)이 감액된 37억 7,075만원이 편성됐음.

<표-23> 2020년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4,093,162	4,093,162	3,770,754	△322,408	△7

- 이는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예산(10억 2,480만원→11억 3,850만원)과 소셜 미디어 의정홍보 사업 예산(9,046만원→1억 5,804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홍보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예산(26억 9,419만원→21억 9,049만원)을 감액했기 때문임.

○ 최근 3년간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실적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19년의 경우 2018년 대비 언론사 지면 홍보,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홍보, TV·라디오 광고, 기타 매체 활용 홍보, SNS 활용 의정 홍보 실적이 증가한 반면, 뉴스전문 채널·종편 의회홍보 프로그램 제작·방영, 대중교통 광고 실적은 감소했음.

- 2019년 예산에서 뉴스전문 채널·종편 의회홍보 프로그램 제작·방영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것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2018.12.13. 시행) 제9조에 의해 정부기관 등의 유사 정부 광고가 금지되었기 때문임.

<표-24> 최근 3년간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현황

구 분	세부 사업명	2019년 (11.15 현재)	2018년	2017년
예산(천원)		4,093,162	3,485,300	3,755,496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언론사 지면 및 홈페이지 배너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분권등 보도기획 6회 (문화일보 등 3개사) 상임위좌담회 개최보도 9회 서울신문 Pn 활용 홍보 1,231건 언론사 지면·배너광고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분권 보도기획 6회 (동아일보 등 2개사) 서울신문 Pn 활용 홍보 888건 언론사 지면·배너광고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분권 보도기획 19회 (한겨레신문 등 6개사) 서울신문 Pn 활용 홍보 1,459건 언론사 지면·배너광고 4회
		1,123,400	963,500	1,014,900
	공동 마케팅 의정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정모니터 연계 홍보 광고(서울, 내일)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정모니터 연계 홍보 광고(서울, 내일)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정모니터 연계 홍보 광고(서울, 내일) 2회
		37,400	37,400	37,400

구 분	세부 사업명	2019년 (11.15 현재)	2018년	2017년
기타 홍보 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지상파 TV 기획 보도 프로그램 제작·방영	•SBS·KBS 기획프로그램 제작·홍보 - SBS 10편, KBS 1편 242,000	•SBS·KBS 기획프로그램 제작·홍보 -SBS 10편, KBS 10편 275,000	•SBS·KBS 기획프로그램 제작·홍보 -SBS 10편, KBS 4편 340,000
	뉴스전문 채널·중편 의회 홍보프로그램 제작·방영	- -	•의정활동 홍보프로그램 제작·홍보 75회 -YTN 48편, MBN 48편 330,000	•의정활동 홍보프로그램 제작·홍보 92회 -YTN 46편, MBN 46편 330,000
	TBS 현장 의정활동 홍보 프로그램 제작·방영	•현장 의정활동 홍보프로 그램 제작·홍보 -시의회플러스 35편 -최일구의 허리케인라디오 31편 -	•현장 의정활동 홍보프로 그램 제작·홍보 -시의회플러스 43편 269,765	•현장 의정활동 홍보프로 그램 제작·홍보 101편 -시의회플러스 36편 -조례팩트체크 26편 -TBS초선의원 39명 출연 492,658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방송 제작·홍보	•케이블TV 프로그램 홍보 -딜라이브 시의원이 뒀다, 시장이 좋다 시즌2 15편 - 딜라이브 메이드인서울시 24편 -티브로드 서울본색 15편 736,109	•케이블TV 프로그램 홍보 -딜라이브 시의원이 뒀다, 시장이 좋다 시즌2 11편 -티브로드 서울본색 11편 242,000	•케이블TV 프로그램 홍보 -딜라이브 시의원이 뒀다 시 장이 좋다 시즌1 27편 -티브로드 골목사용설명서 27편 450,000
	TV·라디오광고	•TV·라디오 광고 제작·방송 -TV캠페인(CATV, YTN, MBN) 2편 -라디오 TBS· CBS 4편 764,880	•TV·라디오 광고 제작·방송 -TV캠페인 (CATV) 2편 -라디오 TBS· CBS 2편 414,529	•TV·라디오 광고 제작·방송 -TV캠페인 (CATV) 4편 -라디오 TBS· CBS1편 301,487
	대중교통 광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광고 -지하철 PDP 21개역104대 - 마을버스 15개구 65대 150,000	•대중교통 광고 -지하철 PDP 21개역104대 -지하철 PSD 7개역 -마을버스 7개구 32대 220,000	•시내버스 광고 : 4,500대 260,000
	기타 매체 활용 홍보	•제10대 개원 1주년 특집 등 청사외벽 홍보판 4회 •상임위 게시판 정비 •의회홍보영상물 제작·활용 - SNS홍보 캐릭터(해통이)를 통한 홍보영상 1편 •30초 영화제 개최 •지방의회행정박람회 개최 515,501	•제10대 개원 홍보 등 청사외벽 홍보판 5회 •상임위 게시판 정비 •의회홍보영상물 제작·활용 -개원식용 홍보영상1편 -일반용 홍보영상1편 -청소년용 홍보영상1편 •인터넷 동영상클럽 광고 •제10대 전반기 의회 슬로건 시민공모 선정 388,784	•지방분권 과제 등 핵심과제 홍보 등 청사외벽 홍보판 4회 •상임위 게시판 정비 215,881
	포털브랜드 검색광고	•주요포털(네이버·다음) 브랜드 검색 광고 8회 33,000	•주요포털(네이버·다음) 브랜드 검색 광고 11회 33,000	•주요포털(네이버·다음) 브랜드 검색 광고 8회 30,000
	소셜 미디어 의정 홍보	SNS 활용 의정 홍보 •SNS콘텐츠 제작 1,175건 •SNS채널 방문수 2,542,440회 •소통이벤트 34회 등 •조례웹툰 45편 •브랜드웹툰 1편(8회) •페이스북 광고 30회 207,160	SNS 활용 의정 홍보 •SNS콘텐츠 제작 1,511건 •SNS채널 방문수 1,158,789회 •소통이벤트 13회 등 •SNS캐릭터 공모선정 개발 27,610	SNS 활용 의정 홍보 •SNS콘텐츠 제작 1,441건 •SNS채널 방문수 918,537회 •소통이벤트 5회 등 -
	효과적 언론홍보 시스템 구축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 및 기사검색 서비스 이용 •연합뉴스·뉴시스·뉴스1 통신사 뉴스서비스 활용 •언론스크랩 서비스 활용 244,022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 •연합뉴스·뉴시스·뉴스1 통신사 뉴스서비스 활용 •언론스크랩 서비스 활용 244,022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 •연합뉴스·뉴시스·뉴스1 통신사 뉴스서비스 활용 •언론스크랩 서비스 활용 243,48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9,69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9,69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9,690	

- 대중교통 광고 중 마을버스 광고 사업은 2018년 최초 시행한 이래 대상 지역을 확대(2018년: 7개구 32대→2019년: 15개구 65대)하고 있으나, 지역 간 광고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2020년에는 사업 예산 증액과 신속한 광고 계약을 통해 서울시 25개구 전 지역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음.⁵⁾
- 빅데이터 활용 홍보 사업은 2019년 최초 시행되어 2020년 관련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를 위해 예산이 3배 이상 증액(2019년: 936만원→2020년: 3,064만원)되었으나 홍보 실적은 물론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있으므로 사업 실행과 실적 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시급히 요구됨.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는 청사외벽 홍보판부터 언론 지면 광고, 방송 프로그램, SNS 의정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에 걸쳐 그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활용하는 까닭에 의정 홍보 효과가 분산화·파편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년 또는 분기별로 전체 홍보·광고 콘텐츠를 아우르는 메인 콘셉트와 전략을 기획·검토·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8)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사업별설명서 p.120>

- 해외자매도시 방문과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속적인 교류사업 강화와 의정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5) 10개 구의 경우 기존 광고 계약에 따라 마을버스 광고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기존 계약 종료에 맞춰 광고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최종예산 대비 4,970만원(6%) 증액된 8억 4,387만원이 편성됐음.

<표-25>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758,968	794,176	843,876	49,700	6

- 이 중 ‘의원국외여비’는 전년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5억 998만원으로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감액분을 증액·조정했기 때문이며, 수행공무원 국외업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2억 2,200만원이 편성됨.

<표-26> 의원국외여비 및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예산안

과목구분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안)
의원국외여비	○ 상임위원회(의장단 포함) 해외 비교시찰 등 487,988,000원 = 487,988천원	○ 상임위원회(의장단 포함) 해외 비교시찰 등 509,988,000원 = 509,988천원
	증감사유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감액분 조정	
국외업무여비	○ 공무원 국외여비 222,000,000원 = 222,000천원	○ 공무원 국외여비 222,000,000원 = 222,000천원
	증감사유	
	- 해당 없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회비 항목 중 하나인 ‘의원국외여비’는 ‘의정활동 수행비’ 항목으로 이관해 1개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의원국외여비 위법 집행 시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⁶⁾ 예산 삭감 등 제제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된 바,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이와 관련해 의원국외여비 예산 삭감, 주민 공개 등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 등 협의를 통해 자율 적용 가능

-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자매도시 및 상임위원회 해외비교시찰 참여 현황을 비교해보면, 자매도시 방문의 경우 평균 의원 8.2명당 공무원 4명이 수행하고, 상임위원회 해외비교시찰의 경우 의원 10.8명당 공무원 4명이 수행하고 있음(표-27).

<표-27> 제10대 의회 자매도시 방문 및 해외비교시찰 참여(의원, 수행직원) 현황

구분	의원참여수	수행직원수	직원1명당 의원수	직원1명당 여비
자매도시 방문	평균 8.2명	평균 4명	2명	182만원
해외비교시찰	평균 10.8명	평균 4명	2.7명	302만원

- 그러나 상임위원회 차원의 해외비교시찰과 관련해 「공무원여비지급 기준」에 따른 수행공무원의 여비가 실제 소요액보다 작아, 그 부족분을 해당 공무원이 자비로 추가 부담한 사례⁷⁾가 일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회사무처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9)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사업별설명서 p.129>

- 지방의회 발전 및 시민권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연구용역을 추진해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시의회 정책대안으로 활용하기 사업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5억 975만원(46%) 감액된 5억 8,240만원이 편성됐음(표-28).

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시안전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통위원회 등

<표-28>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A)			
계	1,044,150	1,092,150	582,400	△509,750	△46

-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이하 “연구용역 조례”)에 따라 기존에 운용하던 연구용역비를,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1인당 500만원 이내)로 대체·편성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전년대비 약 1/2수준으로 감소한 것임.⁸⁾

○ 그러나 기존 의회입법정책 연구용역은 의회비 항목이 아닌 의회사무처 내 별도의 자율사업 예산⁹⁾으로 '9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의회비 비목 내 의원정책개발비와는 그 편성근거와 성격, 운영방법 등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표-29> 의회입법정책 연구용역과 의원정책개발비 비교표

구 분	의회입법정책 연구용역	의원정책개발비 ¹⁰⁾	비 고
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경비 성격	지방자치단체 자율예산(207)	법정 경비(205)	
과제 제안	의원 및 의회사무처	의원 연구단체	
과제 선정	상임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의원 연구단체	
과제 관리	상임위원회 및 입법담당관	의원 연구단체	

8) ‘의회비’ 비목 내 ‘의원정책개발비’ 를 신설한 행정안전부의 취지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의회비’ 내에서만 편성토록 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그 취지를 반영해 의원정책개발비만을 편성한 것임.
 9) '9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본청 ‘연구개발비(207)’ 비목 내 ‘연구용역비’ 로 편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예산의 관리 및 운영 등 제반업무는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에 따름.
 10) 이와 관련한 예산의 세부 집행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없음.

-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비 항목 중 하나로 신설되는 ‘의원정책개발비’(5억 5,000만원)는 ‘의정 활동수행비’ 항목으로 이관해 1개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 기존 「연구용역 조례」에 따라 운영해 오고 있는 의회입법정책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예산에 해당한다는 점, 그 편성근거와 예산 운영 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함으로써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의회 입법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에게 지원이 불가하고 의원연구단체에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함에 따라 향후 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 집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의회사무처(입법담당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중 당초 예정된 연구기간을 초과해 연장한 내역을 보면 ‘17년 14건(전체 34건)→ ‘18년 12건(전체 32건)→ ‘19년 10건(전체 33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표-30).

<표-30> 연구용역 기간 연장 현황

(단위: 건, %)

구 분	연구용역 수행 건수	연구기간 연장 건수	연구기간 연장율
2017년	34	14	41.2
2018년	32	12	37.5
2019년	33	10	30.3
합 계	99	36	36.4

- 그러나, 30% 이상의 연구용역이 당초 계획 기간보다 연장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불필요한 기간 연장으로 인해 상임위원회 본연의 업무나 의회 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10)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업별설명서 p.163>

-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는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제정 및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5,150만원(19%) 감액된 2억 1,600만원으로 편성됐음.

<표-31>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A)			
계	157,500	267,500	216,000	△51,500	△19

- 이는 선거가 있는 해의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건수 감소를 예상하여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격년 주기로 개최하는 의정 정책포럼 미개최로 그 예산(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임.
- 최근 3년간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특히 2019년 들어 토론회 개최 횟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음.

<표-32> 최근 3년간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연 도	공청회	토론회	합 계
2019년	4	85	89
2018년	3	28	31
2017년	8	45	53

- 2019년에 개최된 토론회 85건은 상임위원회(소속 의원 개최 포함)별로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는데, 보건복지·기획경제·교육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10회를 초과한 반면, 운영·도시안전·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5회 미만에 불과함.

<표-33> 2019년 상임위원회별 토론회 개최 현황

(단위 : 회)

구분(주관)		계	운영	행자	기경	환수	문체	보건	도안	도계	교통	교육
개 최 횟 수	상임위	15	-	-	3	2	2	1	2	2	3	-
	의 원	70	3	6	10	8	8	18	-	2	2	13
	합 계	85	3	6	13	10	10	19	2	4	5	13

* 상임위, 의원 공동 주관은 의원 주관으로 분류

** 도심부 도로 현안문제 해결 위한 토론회(2019.4.15)는 공동 개최(기경·도안·교통)로 기경(유용 의원)으로 분류

- 상임위원회별 토론회 개최 횟수가 10회 이상의 큰 편차를 나타내는 것은 시의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예산 운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토론회 개최 상위 3개 상임위원회(보건복지·기획경제·교육)의 소관부서와 관련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편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토론회 개최 횟수의 지나친 격차는 의회 내적으로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과 직원들 간의 편견을 자극하여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저해할 수 있고, 의회 외적으로는 의원 활동에 대한 시민 인식의 왜곡을 야기하여 시의회에 대한 시민 불신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음.

○ 따라서 토론회의 자유로운 개최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상임위원회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 제공과 예산 배분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11)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업별설명서 p.176>

○ 시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원상담전문가 활용 및 민원현장조사 분석과 제도개선 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같이 동일하게 2,950 만원이 편성됐음.

<표-34>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A)			
계	29,500	29,500	29,500	-	-

○ 현재 시민권익담당관은 현장중심의 민원처리 활동과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민원해소자문단의 운영을 통한 민원해결은 물론, 시민권리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민원 행정서비스를 위한 정책자문·연구 등을 실시 중임.

- 현재 민원해소자문단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교통, 도시계획, 안전건설, 갈등조정, 환경수자원)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2기가 운영 중에 있음.

<표-35> 최근 3년간 민원현장조사 및 간담회, 민원해소자문단 실적

(단위 : 건)

구 분	현장조사, 간담회	민원해소자문단
2019년(9.30 기준)	102건	8건
2018년	88건	7건
2017년	126건	8건

- 최근 3년간 시민권익담당관의 민원현장조사 및 간담회와 민원해소자문단의 실적을 살펴보면, 민원현장조사 및 간담회 평균 105건, 민원해소자문단은 평균 7.6건임.
- 이와 같이 민원현장조사 및 간담회가 평균 105건으로 활발히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부산출기초 없이 자의적·관행적으로 매년 예산편성이 되고 있음.

<표-36>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예산안 산출 근거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회의참석수당 150,000원*18명*3회 = 8,100천원	○ 회의참석수당 150,000원*18명*3회 = 8,100천원
	○ 심사(검토)수당 100,000원*7명*7회 = 4,900천원	○ 심사(검토)수당 100,000원*7명*7회 = 4,900천원
	○ 회의관련 소모품 구입 등 300,000원*10회 = 3,000천원	○ 회의관련 소모품 구입 등 300,000원*10회 = 3,000천원

- 따라서 효율적 예산 운용과 민원해결의 구체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원현장 조사·분석 및 간담회와 민원해소자문단의 사업예산을 구체화하여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당초 계획한 「제10대 시의원 공약사항 지원 계획」¹¹⁾이 「공직선거법」¹²⁾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3개월 만에 사업추진을 중단하였고, 이에 대한 미온적인 사업 검토와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해 지적 받은 바 있음(제290회 정례회 운영위 행정사무감사).
- 이와 같이 사업집행 전 법령 위반 소지를 차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향후 의회 입법법률자문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고, 사업의 사전 검토항목 등의 적용대상을 명확화하고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2) 기타사항

1) 예산 산출 근거 명확화 필요

- 예산 산출 기준은 해당 사업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그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11) 의장방침 제85호, (' 19. 4 .5.)

12) 서울시 선관위 답변 회신내용 요지: 개별의원의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등을 취합·관리하여 의원 및 집행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위반될 수 있음(' 19. 7. 23).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사무처 예산안과 부속서류인 사업별설명서를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음.

○ 첫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산출 근거와 비교해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가 2019년도 본예산의 경우와 달라 같은 사업임에도 전년도 대비 세부 사항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알기 어려움.

<표-37> 2020년 예산안과 전년도 예산 산출 근거와 다른 경우(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p.57)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촉탁계약직 보수 = 178,080천원	○ 촉탁계약직 보수 = 249,951천원
	- 월급여 2,713,500원*5명*12월 = 162,810천원	- 보수 3,149,750*5명*12월 = 188,985천원
	- 기타 수당(연차수당, 명절휴가비) 3,054,000원*5명 = 15,270천원	- 보험료 252,533원*5명*12월 = 15,152천원
		- 복리후생비 등 540,000원*5명 = 2,700천원
		- 퇴직금 2,874,250원*2명*5년*150% = 43,114천원
	증감사유	
	- 촉탁계약직 근로자 임금 상승분 반영 및 퇴직금 지급	

○ 둘째, 사업별설명서에는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예산안 산출 근거와 증감 사유가 명확히 기술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해 예산안 증감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움.

-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사보고서에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됐던 문제임.¹³⁾

<표-38> 예산안에 대한 증감 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p.145)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법규집 발간 13,000원*500부 = 6,500천원	○ 법규집 발간 13,000원*500부 = 6,500천원
	○ 전국 지방분권TF 연대회의 개최 15,000,000원*1회 = 15,000천원	○ 전국 지방분권TF 회의 개최 6,000,000원 = 6,000천원
	○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13,000,000원*1회 = 13,000천원	○ 지방분권 토론회, 좌담회 등 개최 15,000,000원 = 15,000천원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2,500,000원*4회 = 10,000천원	○ 지방분권TF 백서 및 홍보자료 등 제작 15,000,000원 = 15,000천원
	○ 지방분권 리플릿 및 교육자료 등 제작 5,000,000원*1회 = 5,000천원	○ 지방분권TF 위원 워크숍 개최 6,000,000원*1회 = 6,000천원
	○ 지방분권TF 위원 워크숍 개최 5,000,000원*1회 = 5,000천원	○ 지방분권TF 활동지원 12,245,000원 = 12,245천원
	○ 지방분권TF 활동지원 12,245,000원 = 12,245천원	
증감사유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종료로 인한 감액 편성		

: 증감사유대로라면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종료로 인해 1,000만원이 감액돼야 하나, 실제로는 지방분권 토론회·좌담회 개최 비용 증가, 지방분권TF백서 제작 비용 추가, 지방분권TF 회의 개최 비용 감소 등으로 600만원이 감액됨.

○ 셋째, 예산안 산출 시 단가와 수량을 정확히 표기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예산안만 기재한 바, 해당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 이는 추진할 사업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해당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3) 2018. 12. 14.,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pp. 199-200.

<표-39>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예산안만 기재한 경우-1(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p.152)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고문료 33,000,000원 = 33,000천원	○ 고문료 33,000,000원 = 33,000천원
	○ 자문료 55,440,000원 = 55,440천원	○ 자문료 56,100,000원 = 56,100천원
	○ 기관쟁송비용 15,320,000원 = 15,320천원	○ 기관쟁송비용 3,300,000원 = 3,300천원
	○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2,760,000원 = 2,760천원	○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5,840,000원 = 5,840천원
증감사유		
- 의회 관련 쟁송수행비용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기관쟁송 건수(1건)에 따른 착수금 반영하여 대폭 감액 - 입법·법률고문의 자문료의 경우 '18년도 이후 변경된 지급방식을 기초로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1년간 자문건수(총 85건) 반영하여 소폭 증액		

<표-40>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예산안만 기재한 경우-2(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p.173)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 9,000천원
		- 회의참석 수당 150,000원*10명*6회 = 9,000천원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연구활동 지원 = 25,000천원
		- 연구발표 수당 300,000원*25명 = 7,500천원
	- 원고료 11,000원*25명*10쪽 = 2,750천원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분과 연구활동 지원 14,750,000원 = 14,750천원	
증감사유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분과 연구활동지원 예산의 경우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예산안만 기재되었음.

- 예산안과 부속서류는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자료
이므로 전년대비 증감 내역과 산출 근거가 명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함.

2)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 의회사무처 내 총 개의 7개의 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각
위원회별 위원에 대한 수당이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등을 근거로 지급되고 있음.

<표-41> 의회 사무처 내 위원회 수당 지급 현황

위원회	담당부서	수당 지급 내역	지급 근거
서울의회및영상물 편집위원회	언론홍보실	·참석수당 : 기본료 100천원, 초과 50천원 ·안건검토료 : 1회당 100천원	·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정책위원회	입법담당관	·참석수당 : 기본료 100천원, 초과 50천원 ·연구발표수당 : 1회당 320천원(1시간기준) ·원고료 : A4 1면당 12천원(최대 6매)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표 적용 (’19.3.1개정분 반영)
인사추천위원회	의정담당관	·참석수당 : 기본료 100천원, 초과 50천원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계약투명성심의회	의정담당관	·참석수당 : 기본료 100천원, 초과 50천원	·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공무국외활동심의회	의정담당관	·참석수당 : 기본료 100천원, 초과 50천원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 활동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위원회	담당부서	수당 지급 내역	지급 근거
민원해소자문단	시민권익 담당관	·참석수당 : 기본료 100천원, 초과 50천원 ·심사수당 : 1회당 100천원	·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3항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예산정책 담당관	·참석수당 : 기본료 100천원, 초과 50천원 ·연구발표수당 : 1회당 300천원(1시간기준) ·원고료 : 100천원(의장방침)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표 적용

○ 그러나 위원회의 지급 근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수당지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연구발표 수당의 경우 지급근거를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연구발표 수당의 경우 정책위원회는 1회당 32만원,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3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고, 원고료는 의장 방침으로 정하는 등 수당책정을 달리하고 있음.

○ 향후 의회사무처 내 위원회 수당에 대한 동일한 지급근거 및 기준을 적용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별첨1]

2017년 「예산편성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지방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도입

현 행	개 정
<p>【별표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u>< 신 설 ></u></p> <p>1. 의정운영공통경비</p> <p>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p> <p>-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p>	<p>【별표 1】 지방의회 관련 경비</p> <p>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p> <p>○ (대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의 3개 통계목</p> <p>○ (총액한도 산정방법)</p> <p><u>{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05))}</u></p> <p>○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p> <p>※ 최초 2018 ~ 2021년 적용</p> <p>※ 단, 의원 정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자체 조정 가능하며,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 평균으로 산정함이 곤란한 경우 등*은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p> <p>* (예시) 의회관련경비 중 일부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p> <p>②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p> <p>1. 의정운영공통경비</p> <p>① (현행과 같음)</p> <p>-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p>

현 행		개 정													
<p>소요경비 예산편성</p> <p>② <u>기준액</u></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편 성 기 준 (연간)</th> </tr> </thead> <tbody> <tr> <td>시·도</td> <td>의원 1인당 6,1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2,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td> </tr> <tr> <td>시·군·자치구</td> <td>의원 1인당 4,8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td> </tr> </tbody> </table>		구 분	편 성 기 준 (연간)	시·도	의원 1인당 6,1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2,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시·군·자치구	의원 1인당 4,8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p>예산편성</p> <p>※ 위탁교육비는 신설되는 <205-07 의원역량개발비> 과목에 계상</p> <p>② <u>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u></p> <p><표 삭 제></p>							
구 분	편 성 기 준 (연간)														
시·도	의원 1인당 6,1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2,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시·군·자치구	의원 1인당 4,8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p>③ <u>증액편성</u> :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7%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p> <p>*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이란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의 의정활동실적 증가율 평균</p> <p>- 의정활동실적 : (회기일수*0.5) + (안건처리실적*0.5)</p>		<p>③ <삭 제></p>													
<p>2. 의회운영업무추진비</p> <p>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p> <p>② <u>기준액(시·도)</u> (단위 : 천원/월)</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의 장</th> <th>부의장(1인당)</th> <th>상임위원장(1인당)</th> </tr> </thead> <tbody> <tr> <td>서울·경기</td> <td>5,300</td> <td>2,600</td> <td>1,600</td> </tr> <tr> <td>기타 시·도</td> <td>4,200</td> <td>2,100</td> <td>1,300</td> </tr> </tbody> </table> <p>-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에 대한 기준액은 행정자치부 기준액(기타 사·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통보</p> <p>※ <신 설></p> <p>※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기준액을 적용 계상 가능</p>		구 분	의 장	부의장(1인당)	상임위원장(1인당)	서울·경기	5,300	2,600	1,600	기타 시·도	4,200	2,100	1,300	<p>2. 의회운영업무추진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u></p> <p><표 삭 제></p> <p>- <삭 제></p> <p>※ 단,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지역단위 등 의장협의회(임의협의회)의 회장 단체인 경우 최근 3년간 의장업무추진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의 30%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p> <p>※ ----- ---예산편성액을-----</p>	
구 분	의 장	부의장(1인당)	상임위원장(1인당)												
서울·경기	5,300	2,600	1,600												
기타 시·도	4,200	2,100	1,300												

현 행	개 정
<p>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p> <p>① 경비성격 :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p> <p>② 편성기준 : 의원 정수×2,000천원(기준액)</p> <p>- 기준액은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음</p> <p>-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추가편성 가능</p> <p>(이하 생략)</p>	<p>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u></p> <p>- <삭 제></p> <p>- (현행과 같음)</p>

□ 의원 역량개발비 신설 및 의장협의체 부담금 규정 명확화

현 행				개 정			
【별표 1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200	205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9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2.~ 4. (생략) 01. ~ 06. (생략)		200	205 의회비	1. ----- -----10가지----- ----- ----- ----- ----- ----- ----- ----- ----- 2.~ 4. (생략) 02. ~ 06. (현행과 같음)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07. <신 설> 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 사도의회, 사군자치구의회 의장 단협의체 부담금 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 (생략) 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 (생략)				07. 의원역량개발비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 1.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단, 의원 개인적인 학위과정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 2. 지방의원 자체교육 강사료 -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 강사료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같은 과목내 별도 계상 가능 08. 의장협의체부담금 1.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중 사도의회의장, 사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체 부담금 09.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 (현행과 같음) 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 (현행과 같음)	

[별첨2]

2018년 「예산편성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신설 및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 관리

현 행	개 정
<p>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u>의회운영업무추진비</u>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p>	<p>제4조(기준경비) (현행과 같음)</p> <p>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u>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u>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p>
<p>【별표 1】지방의회 관련 경비</p> <p>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p> <p>○ (대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u>3개</u> 통계목</p> <p>○ (총액한도 산정방법)</p> <p>- 총액한도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176) + (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05))}</p> <p>* <신설></p> <p>○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최초 2018 ~ 2021년 적용)</p> <p>※ <신설></p> <p>㉕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p>	<p>【별표 1】지방의회 관련 경비</p> <p>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p> <p>○ (대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u>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u> 4개 통계목</p> <p>○ (총액한도 산정방법)</p> <p>- 총액한도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176) + (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05) + <u>(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297))</u>}</p> <p>* 공공기관 위탁교육비와 지방의회의원의 역량 강화 자체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는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로 편성</p> <p>○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최초 2018 ~ 2021년 적용)</p> <p>※ 2019년도에 한하여 의원 1인당 0.8백만원 범위에서 한도 조정 가능</p> <p>㉕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p>

현 행			개 정		
4. <신설>			4.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원의 민간교육 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200	205 의회비	07. 의원역량개발비	200	205 의회비	07.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 교육)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 1.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 국가기관 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2.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 자체 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 -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 강사료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같은 과목내 별도 계상 가능			좌동
		08. 의장협의체 부담금			08.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09.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 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			09. 의장협의체 부담금
		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별첨3]

2019년 「예산편성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① 지방의원 국외여비 위법집행 시 페널티 적용방안 마련(별표1)

- 의원국외여비 위법집행 시 페널티를 적용하되, 제재수단*은 자치단체별 자율적 운영

* 의원국외여비 예산 삭감, 주민 공개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 등 협의를 통해 자율 적용 가능

현 행	개 정
【별표 1】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③ <신 설>	【별표 1】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③ <u>의원국외여비 위법집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제재수단*</u> 을 적용 <u>* 의원국외여비 예산 삭감, 주민 공개 등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 등 협의를 통해 자율 적용 가능</u>

② 지방의원 국외여비 추가 편성기준 명확화(별표 1)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는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하되 국가공식행사 등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추가 편성토록 하고 있으나,
- 자치단체별로 추가편성 기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등 혼선이 발생함에 추가편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

현 행	개 정
<p>【별표 1】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p> <p>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u>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u>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p>	<p>【별표 1】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p> <p>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u>의원국외여비 연간 편성한도액의</u> <u>30퍼센트 범위</u>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p>

③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및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도 한도 내 관리

-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정책연구비를 참고*하여 별도한도 산정 시 (지방의원 수 × 500만원)를 추가 반영

*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정책연구비는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

- 다만, 과도한 예산 증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정책개발비'를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도한도로 관리

현 행	개 정
<p>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p>	<p>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p>
<p>㉔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p> <p>5. <신 설></p>	<p>㉔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p> <p>5. 의원정책개발비</p> <p>① <u>경비성격</u>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p> <p>-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p> <p>※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p> <p>② <u>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u></p> <p>※ <u>별도한도 추가</u> : (지방의원수 × 500만원)</p>

현 행			개 정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table border="1"> <thead> <tr> <th>그룹</th> <th>편성 목</th> <th>설정(통계목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200</td> <td rowspan="2">205 의회 비</td> <td>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1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td> </tr> <tr> <td> <u>09. 의장협의체 부담금</u> <u>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u> <u>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u> </td> </tr> </tbody> </table>	그룹	편성 목	설정(통계목 포함)	200	205 의회 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1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u>09. 의장협의체 부담금</u> <u>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u> <u>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u>	<table border="1"> <thead> <tr> <th>그룹</th> <th>편성 목</th> <th>설정(통계목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200</td> <td rowspan="2">205 의회 비</td> <td>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2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td> </tr> <tr> <td> <u>09. 의원정책개발비</u> <u>1.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u> <u>10. 의장협의체 부담금</u> <u>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u> <u>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u> </td> </tr> </tbody> </table>	그룹	편성 목	설정(통계목 포함)	200	205 의회 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2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u>09. 의원정책개발비</u> <u>1.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u> <u>10. 의장협의체 부담금</u> <u>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u> <u>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u>
그룹	편성 목	설정(통계목 포함)													
200	205 의회 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1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u>09. 의장협의체 부담금</u> <u>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u> <u>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u>													
그룹	편성 목	설정(통계목 포함)													
200	205 의회 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2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u>09. 의원정책개발비</u> <u>1.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u> <u>10. 의장협의체 부담금</u> <u>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u> <u>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u>													